



「경찰공무원 시험대비」 경찰학 모의고사 및 해설(3)

| 한상기 교수 | 박문각 경찰학원



12. '경찰공무원 감독권계'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

- ①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.
- ②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하급관청에게 심사권이 없다.
- ③ 훈령이 "법에 정한 주체, 권한, 절차에 위반되지 않을 것"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다.
- ④ 상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최상급 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.

- ① ② ③ ④

[정답] ①

【해설】 경찰조직법 ■ 난이도 중
 ① (X)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.[♣법령의 구체적 근거 필요(X)]<12경간·16.2채용>
 ② (X)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하급관청에게 심사권이 있다.[심사할 수 없다.(X)]<11경간>
 ③ (X) 훈령의 형식적 요건: 훈령의 주체·권한·절차 등에 대한 요건을 의미한다.(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돌여부)<08채용>
 ④ (X)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서로 모순되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급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.[♣더 높은 관청의 훈령을 따라야(X)]<12경간·17승진>

13. 경찰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.
- ② 일반직·기능직 공무원은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함은 물론이고,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포함되나 의무경찰은 제외된다.
- ③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굳이 준용규정을 들 필요가 없다.
- ④ 경찰공무원의 경과는 '경찰공무원 임용령'(대통령령)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, 상세한 세 분류는 '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'에서 규정하고 있다.

- ① 1개 ② 2개
 ③ 3개 ④ 4개

[정답] ②

【해설】 경찰공무원법 관련 ■ 난이도 상
 ① (O) 경찰공무원 개념.
 ② (X) 형법상, 국가배상법상 공무원: 일반직·기능직 공무원 및 의무경찰도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함은 물론이고,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포함된다.[♣의무경찰 제외(X)]
 ③ (X)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

- ① (♣) 준용규정 없다.(X)][일반법 특별법 관계(O)][경찰공무원법 제1조] <12.3채용>
- ② (O) 경찰공무원법 제4조 제2항<05승진·12.3채용>

14.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,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,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, 징계에 의하여 피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.
- ②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·배임이나 업무상 횡령·배임(형법)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- ③ 성폭력범죄(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제2조)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-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(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제2조)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(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2호)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
- ① 1개 ② 2개
 ③ 3개 ④ 4개

[정답] ④

【해설】 경찰공무원법 관련 ■ 난이도 상
 ① (O)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<20경간·96·97·05·13승진·03·12.1·16.1·18.2·20.2채용>
 ② (O)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<20.2채용>
 ③ (O)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<20.2채용>
 ④ (O)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<20경간>

15. '공무원의 권리'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① 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 권리와 직무상 권리로 나눌 수 있다.
- ② 신분상 권리에는 보수 청구권, 연금 청구권, 실비변상 청구권, 보급품 수령권, 보상 청구권이 있다.
- ③ 직무집행권, 신분 보유권, 직위 보유권, 쟁송 제기권은 특수한 신분상 권리이다.
- ④ 치안총감, 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신분보장이 된다.
- ⑤ 경찰관의 특수한 신분상 권리에는 제복 착용권, 무기 휴대 및 사용권, 장신구 사용권이 있다.

- ① ② ③ ④ ⑤

[정답] ④

【해설】 경찰공무원법 관련 ■ 난이도 중
 ① (X) 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로 나눌 수 있다.

- ② (X) 보수 청구권, 연금 청구권, 실비변상 청구권, 보급품 수령권, 보상 청구권은 재산상 권리이다.<98승진·02·08경간·03채용>
- ③ (X) 일반적 신분상 권리: 직무집행권, 신분 보유권, 직위 보유권, 쟁송 제기권[♣집신보송일].
- ④ (X) 치안총감, 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 제외(신분보장이 되지 않음)한 모든 경찰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해 휴직·면직 당하지 않는다.(국가공무원법 제68조, 경찰공무원법 제30조)<05승진·경간·채용>
- ⑤ (X) 경찰관의 특수한 신분상 권리에는 제복 착용권, 무기 휴대 및 사용권, 장구 사용권이[♣장신구 사용권(X)] 있다.

16. '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'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

- ①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의결 요구의 사유가 있을 경우(신청 받은 경우 포함)에 자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②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,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은 감봉처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,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-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.

- ① ② ③ ④ ⑤

[정답] ②

【해설】 경찰공무원법 관련 ■ 난이도 중
 ① (O)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<13·14승진·12.2채용>
 ② (X) 징계사유 통보를 받은 경우,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.(통 제10조)[♣징계위원회에 신청(X)]<12경간>
 ③ (X) 징계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(취소명령 포함)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·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)
 ④ (O)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<14·15승진·08·14.1채용>
 ⑤ (X)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.(국무총리 중앙 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)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[♣징계대상자의 승인(X)]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[♣20일 이내 범위(X)](경공징계령 제11조 제2항)<17승진·08채용>

< 다음호에 계속 ... >